

2024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제1항
- 北, 쓰레기풍선 살포 피해지원 협조 요청(행안부 민방위과-2105, '24.6.11.)
 - 쓰레기풍선 살포로 피해발생함에 따라 입법 전까지 예비비 활용 신속 지원 협조 요청
- 市 감사위원회 컨설팅 실시 ('24.6.13. 민방위담당관 의뢰→'24.6.19. 감사담당관 회신)
 - (6.13. 의뢰)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재난안전법」 취지를 근거로 적극적·선제적 피해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
 - (6.19. 원안통과) 공익 및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 타당성 인용 결정

□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2건, 79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배정 받아 집행함

- 세부사업명 : 북 쓰레기 풍선 피해지원 (1~2차)
 - '24.5월부터 北 쓰레기풍선 지속 살포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, 대통령실 지시 및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지원 협조 요청함.
- ※ 행정안전부 민방위과-2105(2024.6.11.)호
- 市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을 통해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재난안전법」을 근거로 적극적·선제적 피해지원이 가능함을 인용 의결 받아, 피해접수, 피해조사반,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방침서 수립 및 지원절차 시행함.

- '24.5~6월 피해 12건에 대하여 1차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, '24.6~8월 피해 23건에 대하여 2차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, 건물, 상해 등 총 35건 피해의 지원 타당성 심의 후 예비비를 지급함.
- 北 쓰레기풍선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피해를 지원하였음.

(단위:천원)

예 산 과 목				지출액	지출일 (비고)	비고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	
소 계				79,875,370		
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	완벽한 통합방위태 세 확립	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	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45,551,650	'24.08.09	제1차 12건 지원
				34,323,720	'24.09.30	제2차 23건 지원

※ 북, 쓰레기풍선 지속 살포됨에 따라 향후에도 입법 전까지 예비비사용이 예상됨.